

-15000 / +100
+2500

연세대는 성폭력 안전지대?

- 연세대 내의 반성폭력 운동과 반성폭력 학칙 제정

인문학부 4학년 강김정임

0. 들어가며

아마도 한국사회의 2000년, 21세기의 첫해를 설명하는 단어들 중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단어 중의 하나는 바로 '성폭력', 혹은 '성희롱'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대변인이자 진보적 사회운동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될 뻔했던 장원씨의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개그맨 수병진씨, 육군의 장군, 대학 교수 등 유명인사 내지는 사회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줄줄이 성폭력 사건의 도마 위에 올랐고, 롯데호텔 파업의 진압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막 말하고', 여성노동자들을 '막 만졌던' 공권력도 그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한편 각 대학에서는 잇따라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 제정되었고, 온라인 상에서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100인 위원회'가 공개한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진보진영 내의 성폭력 가해사 명단으로부터 비롯된 성폭력에 대한 논쟁은 2001년이 된 현재까지 온라인의 성계를 넘어서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직 설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판단은 유효할 것 같다. 장원씨 사건이나 주별진씨 사건에 대한 담론에서 보여지는 '꽃뱀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뉴스나 신문에서 보도된다는 것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폭력 문제의 가시화는 선정적인 가십거리로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 뿐만 아니라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취업 정책의 집행 등 전 영역에 있어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이때의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간 '친밀감의 표시', 혹은 '사연스런 남성성의 표현' 정도로 어거졌던 음담패설 등의 언어적 행위나 외설적인 사진, 편지 등을 보여주는 등의 시각적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의 포괄적인 성희롱 개념은 지속적인 한국사회 내 반성폭력 운동의 결과이며 여성과 남성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 내의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차별금지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속속들이 제정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나 성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의 대학에서의 변화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각 대

1) 이때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학에서 받아보게 된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고충·상담장구 마련, 교육에서의 대표적인 성희롱 유형, 수업상 적절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성희롱, 남녀차별 예방과 금지를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 참조해야 할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침을 밝히고 있다. 2000년 연세대에서의 反성폭력 흐름, 특히 흔히 反성폭력 학칙으로 불리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의 제정으로 실효화된 흐름 또한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0년 대학 내 성폭력에 관련한 연세대 내에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학생 중심의 反성폭력 운동과 타 대학에서의 움직임 등의 여러 조건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1. 연세대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

- 反성폭력 학칙 제정 전까지의 反성폭력 운동

1996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계기로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됨

연세대 내에서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96년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한총련 사태'가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96년 8월 말 '언행된 여학우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자세한 상황과 함께 컴퓨터 통신에 올라오면서 '한총련 사태' 언행과정에서 일어난 전경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었고, 한편으로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발언을 듣거나 온갖 욕설이 동반된 협박전화 등을 받는 등의 해프닝을 낳기도 했다.²⁾ 연세대 내에서도 여성사지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자보 등을 통해 공론화했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소, 고발 내용의 기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다음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전경들의 발언과 성폭력을 당했던 여학생들의 증언 중의 일부이다.

588이나 가라. 이런 년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다 수출해 버려야 한다.

너희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 기쁨조나 해라. 이 씨발년들아.

니네 사수대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밥에 뭐했냐. 사수대한테 니네 몰대주고 살았지?

고년들 털 참 많이 생겼다.

아, 이 씨발년들아. 니네 위안부 노릇하려고 왔다.

둘 한번 던진 애들한테 한번씩 빨아줬냐.

내가 밥 사줄테니까 내 것도 빨아줄래?

2) 추미애 의원은 96년 10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총련 사태 진압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 관련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성폭력을 당했던 여학생들의 증언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전경들이 여학생들에게 했던 언어적 성폭력이 추미애 의원의 입술 통해서 보고되었고, 이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추미애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말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느냐며 오히려 추미애 의원을 비난했다.

이 씨발년아, 이 창녀만도 못한 년아, 넌 몇 놈하고 잤나.

니네 우리 차에 타기만 해봐라. 다 강간해 버릴꺼다.

“지나가는 애들 순서대로 가슴을 덩씩 짚아가지고 뜯었어요 엉덩이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 따로 있었구요. 급하게 지나가니까 손을 탁 집어 넣었어요”

“전경들이 곤봉으로 배를 때리고 가슴을 쥐고 내려갈 때 뒤에서 손이 물리워서 음부쪽을 만졌고...”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 자료집, 1997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 내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주사파론이나 학생의 자치권 탄압 등 ‘한총련 사태’에 얽혀있는 여타의 문제들에 묻혀 그리 크게 터져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사건으로 인해 촉발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가 구성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여성연대회의는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국민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연세대 총여학생회, 영남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등 18개 대학의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등 여성운동을 하는 학생 단체들이 학내 성폭력 근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성된 연대모임으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운동을 각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대학 내 성폭력 사례, 반성폭력 운동에 관한 자료, 성폭력 사건 처리, 각 대학의 반성폭력 학칙제정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해 왔으며 대학 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다.³⁾ 사실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는 여성연대회의를 빼놓고서는 서술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연대회의는 각 대학에서 공론화되었던 개별적인 성폭력 사건부터 반성폭력 학칙제정의 상황 등을 공유·소통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주축이 되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my body is a battle ground!

97년에는 연세대 내에 있는 여성자치단체들에 의해서 성폭력 사례들이 수집되고 공개되면서 학생간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수업시간의 교수에 의한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 사례 중 학생사이의 성폭력은 술자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비밀 비재하게 발생하는 음담패설이나 여성에게 술 따르라는 요구, 여성을 대상화하는 게임에서의 벌칙 등의 성폭력부터 신체적 성폭력까지 다양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남성중심성, 왜곡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에 대한 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성폭력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강

3)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4년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일명 우조교 사건)을 윤바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우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의해서였다. 신교수 사건으로 인해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수성, 특히 교수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수성을 전담한 공대위는 교수·교직원·학생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해 성폭력 사건이 공식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신교수 사건의 소송이 93년부터 시작되어 98년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면서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소강기를 맞아가 각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들이 공개되고 97년 2월에 국민대 공과대 교수에 의한 여학생 강간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필요성이 다시금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장임나혜,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 : 당신도 발언해야 한다』, <문우>36호, 2000)

간이나 물리적 성추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이라는 것, 성폭력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도덕성의 부족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것이 학내에서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에 알고 있던 성폭력에 대한 개념부터 뒤흔드는 것이었다. 93년 서울대 신정후 교수 성희롱 사건⁴⁾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가볍다고 여겨지는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성희롱이 된다는 것이 이슈화되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성희롱의 포괄적 개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교수와 학생, 혹은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등 권력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즉 가해자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학생의 수업상 또는 직원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라는 지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97년에 연세대에서 여성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상생활 속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육체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우리의 일상이 바로 정지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97년 말에는 신학과 김모 교수(? 김관진 교수)가 교양필수인 현대인과 기독교 수업시간에 행한 성폭력적 발언이 총여학생회에 의해 공론화되고 교수의 공식적인 사과가 요구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김모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한 학생에 의해 총여학생회 선거가 진행되는 중 총여학생회의 한 선거운동본부로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가 총여학생회로 당선된 후 총여학생회에서 이 사건을 사보들 통해 교수의 실명과 함께 공론화하고 당사자인 교수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신고한 학생이 기록한 수업시간 중 교수 발언의 일부이다.

「하얀 기억 속의 너」라는 소설 얘기하면서,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여자가 자기를 물심양면 도와준 한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다고 합니다. 날 기지고 싶으면 가져라...' 이 얘기를 하면서 교수는 껄껄대며, 그야말로 껄껄대며 '정말 그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상대 남학생들? 그야말로 눈 앞의 떡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는 정말 대단하게도 진정으로 우려나지 않는 성관계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 교수의 말, '예, 저는 이 남자를 보며 정말 예수님의 현신이라고 느꼈습니다...'

'여학생들 멋이나 내고 시집이나 잘 갈 궁리하지 마세요, 이대 학생들 보면 철학, 신학 박사가 다수인데 연대 여학생들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뽀뽀뽀하게 화장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나 꼬셔볼까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 나이 들어서 기능은 있지만 힘이 없으면, 집에 있는 여자들 맨날 생각하는게 뭐겠어요?(도중에 수업에 늦게 들어온 한 여학생에게 '시집갈때도 그렇게 늦을래?) 바람필 궁리나 하고... 여자 때리지 마세요 어차피 남편이 약값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여자한테 맞는 남자도 있지요. 얼마나 병신이면 맞고 삽니까? 안 그래요, 상대 남학생들?'

4) 주 3)에서 밝혔듯이 이는 '우조교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었던 성희롱 사건을 의미하는데 '우조교 사건'이라는 명칭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왜곡된 성폭력에 대한 담론에 기반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딴 '신정후 교수 성희롱 사건'이라고 칭한다.

‘정육에 불타서 참을 수 없을 땐 한 몸처럼 되지... 안 그래요, 여기 남학생들?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 그래요, 내가 아한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육이 충족되고 나면 넌 남이라는 식으로 싹 돌아누워 잠이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매일 먹는 반찬 지겹기도 하지 않겠어요?’

‘남자들 출장가고 그러면 다들 딴짓하게 마련이지요. 사실 출장간다면 남자 동료들이 다들 좋겠다고 한 마디씩 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학생들, 남편이 출장간다면 괴로워해야 합니다... 제 친구놈이 하나 있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새로 고졸 여사원이 들어오면 꼭 따먹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양식은 있어가지고 자기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성을 아는 눈빛은 어둡고 음침합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군대 갔다온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사실 군대 갔다오면 다 사창가에 가보는 거 아니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기 하겠지만... 난 척 보면 성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2000 학생이 중심되는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자료집』, 2000

이 사건은 연세대 내에서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이 교수의 실명과 함께 공개되고 공식적인 사과가 요구된 최초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된 최초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당사자인 김모 교수는 결국 수업시간에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한다.

97년 말에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98년 한해동안 활동을 했던 총여학생회는 선거 때 성폭력 학칙 제정과 성폭력 전달기구 설치라는 공약을 내놓았다.⁵⁾ 연세대 내에서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학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98년 총여학생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연세대에서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총여학생회에서 연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유형과 사례, 성의식,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연대회의에서 주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 98년에는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나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등 학내에 있는 여성자치단체들은 반성폭력 학칙제정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나갔다. 여성자치단체들은 단과대 안에서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통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지규약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화장실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례를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이러한 흐름은 99년까지 이어졌다. 당시 학생들에게 성폭

5)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 현재의 형법상 규정은 가해자인 남성의 시점이 지배적입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② 성폭력 전달기구를 만들겠습니다.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제정된 학칙을 운용하고 법 자문 및 변호사 선임, 피해자 치유 상담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등, 학내 성폭력 전반을 전달하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제10대 총여학생회 김신현경·최진승빈 선거운동본부, p. 16, 선거정책자료집, 1997)

력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례 수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말 듣고 서 있는 대학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수집된 사례들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진보적인 공간으로서의 대학, 혹은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이라는 이름 속에 은폐되어 왔던 대학 내 성폭력의 현실을 폭로하고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막연히 '불편함' 혹은 '불쾌함'으로 각인되어 있던 사건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언어화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전히 '나는 성폭력이랑 상관없다'는 인식이 학내에 팽배하지만 참여학생회와 여성사지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연세대 내에서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고, 성폭력이 소수 강간범의 문제가 아닌 일상에 만연한 문제라는 생각이 서서히 학내에 확산되었던 것 같다.

2. 남녀차별금지법과 反성폭력 학칙

2000년에 연세대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운동의 결과이자 또 하나의 시작점인 규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평등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뿐만 아니라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차별시정 대상기관을 민간기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남녀차별금지법이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성폭력의 개념, 특히 여성단체에서 주장했던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비교적 충실히 고려한 성폭력 개념이 법적으로 정리되어 명문화되었다는 점과 함께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1. 목적, 2. 정의, 3. 교육(학정)기관의 책임, 4. 학교(기관)장, 상급감독자, 직원의 책임,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6. 성희롱 예방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역할분담, 첨부사표 1.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첨부자료 2.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충상담시 유의사항, 참고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은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절차,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피해사의 사세 및 대처요령, 교육에서의 대표적인 성희롱 유형 등을 비교적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에서 신속하게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가. 고충상담자의 지정

1)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에 관한 고충신청 및 상담(이하 '고충상담'이라 함)이 "직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제기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 고충상담을 받는 직원 또는 고충상담에 응하는 상담원 등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2인 이상의 상담원을 두되, 상담 시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성의 상담직원이 동석)

3)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서는 기관장이 정하는바에 의해 상담요원(상담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적절 활용 병행)등을 두고 상담을 받을 일시, 장소 및 절차를 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 상담

기획 확대 방안 강구

4) 상단요원에 대한 적절한 연수기획 부여 및 교육훈련 지원으로 상단 전문성 제고 방안 강구(상단자 연수기관 : 별첨 참고자료 9. 단체명단 참조)

나. 고충상담자의 임무

1) 상단원 등은 고충상단에 관련되는 문제의 사실관계 조사 및 당해 고충상단에 관련되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조언 등으로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 노력

2) 상담원 등은 위 고충상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역량 발휘

3) 상단원, 주변 관계자 등은 고충상단에 응함에 있어 관련자의 자존심이나 명예, 인권 등을 존중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비밀준수 의무 부과)

6. 성희롱 예방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역할분담 중 일부

다. 대학 등 각급학교(기관)의 역할

○ 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 통보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참고하여 학교(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

○ 교육현장에서 학생 상호간의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 수업 시 지도하고, 학칙, 내부규정 등으로 문제해결 노력

위와 같은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연세대 내에서도 여학생처가 주축이 되어 1999년 말부터 **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학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反성폭력** 학칙이 필요하다는 총여학생회나 여성자치단체 등 학생의 목소리는 98년부터 가시화되었으나 학교측에 의해 실질적으로 **反성폭력** 학칙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학칙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거의 2000년부터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3. 2000년,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다

2000년 연세대에서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단체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反성폭력**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새터 **反성폭력** 내규제정운동이고 두 번째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다.

성폭력적 문화에 대한 자치적 성찰 - 새터 反성폭력 내규 제정

새터 **反성폭력** 내규 제정 운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하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 기간에 비밀비재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反성폭력** 내규를 학생사회에서 자치적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주목한 이유는 그것의 특수성 때문이다. 연세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일반적으로 학교측에서 준비한 행사와 응원전 등의 프로그램으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3일 정도의 공식 오리엔테이션과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2박 3일 정도의 신입생 수련회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입생 수련회는 신입생 수련회에 참가한 신입생과 선배 모두가 2박 3일동안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성폭력

이 발생한다.

98년 모 단대 신입생 수련회에서 게임의 벌칙으로 97학번 한 여학생이 다른 조에 가서 술을 얻어오게 되었다. 술을 얻으로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후배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그 여학생에게 '스트립쇼 해라, 그러면 술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98년 신입생 수련회시 모 단대에서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그 일을 겪은 여학생은 자다가 깨서 굉장히 당황했으나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옆 방으로 옮겨서 잤다.

99년 모 단대 신입생 수련회에 중앙동아리 하나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참석했다. 신입생 수련회 행사 중 이 동아리에 속해 있는 한 남학생이 수련회에 참석한 여학생들을 점수로 평가하고 평가글을 그 동아리의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올렸다. 이를 안 단대 학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동아리에 속한 당사자 남학생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관련된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하였다.

99년 모 단대의 조별 술자리에서 어떤 조 남학생 5명이 술을 얻으러 다른 조에 돌아다니면서 어린이 체조 노래를 개사하여 성기를 지칭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 자리에 있던 여학생이 불편을 제기했으나 '재미있지 않느냐'라는 말로 무시되었다.

99년 새터에서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 이에 여학생이 응하고 술을 따르자 '잘 따르네, 술집에서 일했나보지?'라고 말하였다.

96년 모 단대에서 D전자 광고를 패러디한 내용으로 남학생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럼을 짜고 앞에 있는 남학생 한 명이 암바사를 들고 있었다. 연구원 복장을 한 여학생이 남학생이 들고 있던 암바사 병을 탁탁 치면서 멘트를 하자 남학생이 암바사를 뿌리며 사정하는 것을 훔쳐내었다.

-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새터 反성폭력 내규 토론용 자료집」, 2000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 대 개인, 혹은 집단 대 집단의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해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며,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장난삼아 한 말이나 행동'이라는 말로 성폭력적 언행이 정당화되기 일쑤이다. 또한 신입생의 상우 선배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대학문화는 진보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불쾌감들을 '대학문화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성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보적인 것이구나' 등의 생각으로 무마하거나, 설사 그것을 폭력이라고 느낀다 해도 선후배간의 권력관계고 인해, 혹은 즐거운 분위기를 망칠까봐 문제제기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물어두게 된다. 바로 이것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특수성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터 反성폭력 내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폭력의 유형을 명시하고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구의 설치와 징제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성폭력적 문

화를 성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인 놀이 문화나 울주문화를 성찰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학생 스스로의 고해인 것이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두 번째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에 있어서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양면적 효과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분명 **반성폭력 학칙** 제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98년부터 꾸준히 **반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학생의 입장, 더 정확히 말하자면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양날의 칼과도 같았다. 남녀차별금지법이 양날의 칼과도 같다는 것은 앞서 서술한대로 남녀차별금지법이, 특히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이 학교측에서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졸속적으로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후자에 대한 우려는 근거없는 기우가 아니라 아주대의 실제 사례에서 근거한 이유있는 우려였다. 아주대에서는 1999년 3월에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학칙의 실상을 살펴보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 따로 제정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학칙의 상별 위원회 조항에 "강간·희박, 성폭력·무기정화, 성추행·유기정화"의 조항이 첨가된 것으로 기존 학칙의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아주대에서 제정된 학칙은 총여학생회 및 다른 학생회 임원조차 뉴스 방송을 보고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학생들과의 논의과정이 전혀 없었고 일체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성폭력, 성추행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피해자 보호조항이 빠져 있고, 교수 및 교직원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채 학생만을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대의 **반성폭력 학칙**은 잘못 만들어진 **반성폭력 학칙**의 대명사가 되었다. 비록 아주대의 **반성폭력 학칙** 제정은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학칙이나 내부규정 등의 사제 내부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와 남녀차별금지법 이후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한 학교측의 학칙 제정 움직임은 연세대에서도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연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연세대의 규정은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원주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각 1인으로 구성된 학생대표와 여학생처장 외 4명의 교수로 이루어진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6월 첫 회의를 가지고 학칙의 가안을 검토·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10월에 제정되었다.⁶⁾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총여학생회와 여성자치단체를

6) **반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과 교수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는 등록금 동결과 모집단위 광역화 전면 제논의 등의 요구안을 채택하였던 4월 17일의 학생 총회에서 제출되었다. 이후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측에 성실히 답해줄 것을 요구하며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등의 학생들은 학교의 본관을 점거했고, 5월 12일 학생대표와 학교측은 학생측의 요구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서 **반성폭력 학칙** 제정에 있어서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성폭력 학칙 제정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성폭력 대책위

은 연세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통해 학교측이 제시한 反성폭력 학칙 가안에 대한 학생측의 수정안을 만드는 한편 교수와 학생간의 성폭력부터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학생과 학생간의 성폭력 사례들을 공개했다. 아래는 당시에 공개된 사례 중 교수와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례의 일부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생생리적으로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하며 휴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거나 매매춘에 종사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는 거지요'(의대 전공 수업, 행동과학-인간의 성행동)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화가 나서 어디 말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총여학생회로 메일을 보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업시간에 앞에 앉은 어떤 여학생이 졸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자네 발업소 나가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심리학적인 용어를 설명하시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예라는 것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두고 선택을 할 때 약혼만 했을 때는 다른 남자가 맘에 들면 파혼을 하면 되지만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갔다와서는 다른 남자가 더 맘에 든다고 해도 이미 첫날밤을 치른 버린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을 번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택한 남자를 좋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수님은 종종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그 교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할 데가 없나 찾다가 그냥 총여학생회에 말하는 게 제일 낫듯 싶어 편지 드립니다.(문대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듣는 한 여학생이 총여학생회로 보낸 e-mail의 내용)

모 교양수업의 강사가 독수리상 앞에 처녀가 지나가면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는 걸 보면 요즘 연세 여학생들의 성관념을 알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후에 그 강사는 웃으면서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 중에 출각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남학생들을 킁킁대면서 소란스러운 분위기였고 몇몇 남학생들이 장난으로 손을 들기도 했다. 그러더니 그 강사가 다시 수업을 듣는 여학생 중에 처녀가 있으면 일어나보라는 발언을 했다.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작년 모 건물에 게시는 수위 아저씨는 많은 여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팔을 쓰다듬는다던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경우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다리를 쓰다듬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아저씨는 다른 곳을 가다가도 익숙한 여학생이 있으면 따라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학생들이 그 아저씨가 자신한테만 이상한 줄 알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저씨한테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단과대 학생회로 신고를 했다.

-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2000 학생이 중심되는 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자료집」, 2000

하지만 초기에 학교측이 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

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한다.

- 이 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성폭력 학칙을 제공한다.
- 교수와 학생은 동수로 한다. (학생대표 :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원주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 2000년 6월 초 첫회의를 실시한다.

려 하거나⁷⁾, 반성폭력 학칙에 있어서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각종 조치를 실시, 외적하는 기관인 대책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등⁸⁾ 학교측과 학생측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과정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문제가 되었던 대책위원회에도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가 적용대상이 되는 학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학생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학생측의 요구가 학교측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몇 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총학생회나 여성사지단체들의 반성폭력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⁹⁾ 이에 덧붙여 반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과 학칙 제정 이후 학칙의 운영이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교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가능했을 것이다.

4. 반성폭력 학칙 제정=성폭력 근절?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세대의 반성폭력 학칙 제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규정의 시행세칙이 이 글을 쓰고 있는 2001년 1월 31일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았을뿐더러 앞으로 제정된 학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측,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적극적이고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규정의 제정은 대학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노력과 활동의 성과임과 동시에 시작인 것이다.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 성폭력의 재생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이제까지 대학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는 은폐되었고, 그 중 몇몇 사건에 대해서만 학교측, 혹은 학생측에서 자체적인 대책위원회 등이 꾸려져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¹⁾나마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자가 원하는

7)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학교측은 반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있을지언정 학생대표에게 의사결정권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8) 이는 학교측에서 제시한 규정 가안 중 제2절 성폭력위원회(제정된 학칙에서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성폭력위원회

제8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2. 각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 규정 중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대로 가해자가 적당한 처벌을 받았던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자유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그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이다. 학생간의 성폭력은 주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과, 같은 동아리에 속해있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기가 싫어서 수업을 듣는 것에도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동아리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수와 학생사이의 성폭력일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교수에게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피해자의 많은 수가 졸업할 때까지 혹은 논문을 쓸 때까지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다.

反성폭력 학칙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서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용시사에 대하여 행하는 성폭력만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학생간의 성폭력 등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反성폭력 학칙 제정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제 우리가 견제해야 할 것은 反성폭력 학칙의 제정이 성폭력 문제에 관한 한 타 학교에 비해 연세대의 진보성을 저절로 담보할 것이라거나 성폭력 안전지대로서의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이나, 규정의 제정 자체가 연세대에서 진행되었던 몇 년간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남녀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진 여성단체들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위에서 가능했던 것인 만큼, 우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쉼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리 일상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함께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대한 관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성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남성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10) 남녀차별금지법의 제6장 성희롱 기준 중 제16조 성희롱의 금지영역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용시사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10. 10

1. 제정 이유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규정 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시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 당 기 관

제1절 성폭력상담실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

를 설치한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인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취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위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